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0

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김남희·오기형·전현희

김원이 · 이용우 · 이훈기

정진욱 • 허 영 • 박지혜

오세희 · 강준현 · 이해식

박수현 • 위성곤 • 박희승

손명수 · 강득구 · 모경종

이건태 • 이재관 • 김 유

이연희 · 복기왕 · 양부남

박해철 • 정을호 • 김용만

김태선 • 백승아 • 정성호

강유정 • 전진숙 • 조인철

박선원 • 정준호 • 문대림

민형배 · 최민희 · 황정아

김태년 • 이학영 • 송재봉

안태준 · 조 국 의위

(4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'노무제공자'를 적 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의 경우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 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.

이에 병원 간병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(안 제91조의2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61 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의4에 제91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1조의22(병원 간병인에 대한 특례)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간병인 중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8제1 항의 간병인 소개 사업자를 통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(이하"병원 간 병인"이라 한다)은 제91조의15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병원 간병인의 업무상 재해 인정 등에 관한 적용례) 제91조의22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제91조의22(병원 간병인에 대한 특례)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간병인 중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8제1항의 간병인 소개 사업자를 통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(이하"병원 간병인"이라 한다)은 제91조의15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
	로 본다.